

2010.06.07 미래정책연구실

□ **정부지원 정책**

**1. 귀농인 선행학습교육 지원정책**

**1) 귀농인 농업인턴제 사업**

- 귀농·귀촌 희망자가 선도농가 농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면서 영농기술과 경영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인턴자격:** 귀농교육 사업신청일 기준 **18~55세 이하인 자**, 농고·농대 출신자, 제대 후 구직자 등 미취업자로서 **연수 후 귀농희망자**
  - **선도농가자격:**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창업농업경영인 및 농업법인 등 시·군수가 인정한 농가
- 지원조건: **1인당 월 120만 원**(자부담 24만 원, 보조금 96만 원) 지원, 법정근로 시간과 같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월 20일 근무

**2) 귀농·귀촌 컨설팅 및 멘토링 사업**

- 농업경영컨설팅 전문업체로 인증을 받은 민간업체와 선도농가 및 귀농 선배가 **귀농희망자에게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하우를 제공하는 사업**
  - 귀농희망자는 농촌 정착, 작물 재배, 경영 일반, 유통·가공분야 경영 및 기술(현장으로 기술)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음.
- 지원대상
  -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과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을 겸업하고 있는 자
  - 2004년 1월 1일 이후 전세대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귀농희망자 중 품목 또는 귀농지를 결정한 자

- 지원조건: 총 735명 지원, **1인당 150만 원**(자부담 30만 원) 지원

**3)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지와 주택을 구입하기 전까지 **일정기간 동안 직접 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기술을 배울 수 있는 제도**
  - 귀농인의 집은 전국 각 지역에 100개소가 마련되어 있고, 온 가족이 이주하는 귀농인에게 우선권이 있음.
- 지원대상
  -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과 농지를 확보하고 현지에 정착하려는 자
  - 가족(부부 등)과 함께 이주하고자 하는 자(단독 입주자 제외)
    - 귀농교육 이수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지원조건
  - 입주시 임대료 무료(6개월간), 전기, 수도요금 등 실비 부담
  - 마을 차원의 입주자에 대한 세부 지원내역
    - 체험실습장(텃밭) 제공, 농기계 임대 및 알선, 종자, 기자재 제공
    - 영농기술 지도(계절별 작물 선정, 파종, 수확 등)
    - 영농도우미 지정
    - 기타 애로사항 상담 및 문제해결 지원 등

**2. 농촌정책 지원정책**

**1) 농업창업자금 지원사업**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농촌에서 영농을 기반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농지와 각종 시설, 설비, 농기계 등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2004년 1월 1일 이후 귀농자

- 농촌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타시·도에서 거주한 자
  - 귀농교육이수자(3주 이상 또는 100시간 이상)
  - 병역필·면제자와 금융거래에 이상이 없는 자
  - 경종분야 : 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 영농 등
    - 제외대상: 표고버섯, 산나물(노지), 밤, 송이버섯, 산나물, 산약초, 장뇌, 조경수, 분재 등 임산물 또는 버섯종균 배양사업, 내수면 어업 등
  - 축산분야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 농촌비즈니스 분야 : 농촌관광, 체험농장, 농촌레스토랑 등
- 지원조건: 3,000세대 지원, **세대당 1천만 원~최대 2억 원**까지 융자
- 연리 3%,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

## 2) 주택구입 지원사업

- 영농을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가주택을 구입할 경우 그에 따른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2004년 1월 1일 이후 귀농자
  - 농촌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타시·도에서 거주한 자
  - 귀농교육이수자(3주 이상 또는 100시간 이상)
  - 병역필·면제자와 금융거래에 이상이 없는 자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인 주택
    - 제외대상 : 다가구·다세대형 주택
- 지원조건: 농가주택 구입 지원 1,500세대, **세대당 4천만 원** 한도
- 연리 3%,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

## 3)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촌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2004년 1월 1일 이후 귀농자
  -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에 이주하였거나 이주하고자 하는 자(자녀 제외)
  - 농촌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타시·도에서 거주한 자
    - 이주 전이라도 농가주택 매입,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
- 지원조건
- 3,000가구, **가구당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실비 지원
  - 수리비는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 부엌, 화장실 개량 등 포함.
  -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체결한 경우 지원

## □ 지자체 지원정책

### 1) 시·군별 자금 지원정책

- 개요
- 귀농인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지자체에서는 **정착지원금, 주택 용자금, 빈집수리비 및 자녀학자금, 여성출산장려금, 영·유아양육비** 등 대부분 귀농인 유치를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음.
  - 귀농인 지원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자자체는 시·군별로 자체의 예산에 맞춰 귀농인을 지원하고 있으며, 귀농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음.
- 특이사항
- 농촌정착 의향이 높은 사람들은 **대부분 농촌이 성장배경인 50대 및 40대**

계층으로 교육 수준이 높고 영농 경영능력을 가지고 있음. 한편, 가족 단위 귀농의 제일 큰 애로사항은 주택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지자체별 귀농·귀촌 지원제도는 대부분 영농사업 지원, 주택 보급 위주로 제정되어 있어 귀농희망자에게 안정적인 경제활동 보장과 주거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생활 밀착형의 특징을 가짐.
  - 이는 지방정부가 귀농희망자에게 농촌에서의 소득원과 주거공간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농촌 정착률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그 밖에 영·육아 양육비 및 출산비용 경감을 위한 출산육아지원, 자녀 양육비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등 다양한 복지혜택 및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음.

## 2) 귀농·귀촌 지원 조례시행 지자체

- 각 시·군별 귀농인을 포함한 농어업인들을 위해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정보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각 시·군별 지원조례를 통해서 귀농지의 지원정책을 알 수 있음.

<귀농·귀촌 지원 조례시행 지자체>

시도	조례제정 지자체
전남	도청, 영광, 강진, 곡성, 해남, 고흥, 신안, 화순, 완도, 나주, 영암, 담양, 무안, 보성, 순천 (총 15지역)
전북	도청, 고창, 순창, 익산, 군산, 남원, 김제, 장수, 부안, 완주, 임실 (총 11지역)
충남	도청, 금산, 공주, 부여, 보령, 서산, 홍성, 서천, 예산 (총 9지역)
충북	도청, 충주, 제천, 옥천 (총 4지역)
경남	도청 (총 1지역)
경북	도청, 김천, 청송, 영덕, 울진, 고령, 상주, 영양, 영주, 문경, 의성, 예천, 봉화 (총 13지역)
강원	속초, 영월, 강릉, 양구 (총 4지역)
제주도	도청 (총 1지역)

\* 지자체별 귀농·귀촌 지원사업 : 별첨 참조

<별첨>

## 지자체별 귀농·귀촌 지원사업

지자체	지원내용
강원	평창 ·사업지원: 가구당 2천만 원~2억 원 한도 용자(연리 3%) ·주택(빈집) 수리비: 가구당 500만 원 한도 ·주택자금: 가구당 2천만 원 용자 지원
	양구 ·사업지원: 농가당 최고 3천만 원 한도 보조(생산소득/생산기반 사업) ·주택(빈집) 수리비: 가구당 250만 원 한도 ·교육훈련비: 선도농가실습지원 가구당 240만 원(30만 원/8개월) 한도 귀농학교수강료지원 가구당 30만 원 한도
충북	음성 ·출산장려금지원: 첫째아(월 30만 원), 둘째아 120만 원(월 10만 원/년) 셋째아 180만 원(월 15만 원/년)
충남	금산 ·사업지원: 가구당 300만 원 한도 보조(생산소득/생산기반사업) 초과시 자부담 ·주택(빈집) 수리비: 가구당 300만 원 한도
	보령 ·사업지원: 가구당 1천만 원 한도 보조(생산소득/생산기반사업) 자부담 50% ·주택(빈집) 수리비: 가구당 500만 원 한도 ·교육훈련비: 선도농가실습지원 가구당 240만 원(30만 원/8개월) 한도 귀농학교수강료지원 가구당 50만 원 한도
	서천 ·사업지원: 가구당 5천만 원 한도 보조(생산소득/생산기반사업) 자부담 50% ·이사비지원: 가구당 100만 원 한도 ·주택(빈집) 수리비: 가구당 500만 원 한도 ·주택개량용자지원: 해당연도 배정 물량의 100분의 10 범위 내 우선 용자 ·교육훈련비: 선도농가실습지원 가구당 360만 원(60만 원/6개월) 한도 귀농학교수강료지원 가구당 50만 원 한도
전북	순창 ·이사비지원: 가구당 100만 원 한도 ·주택(빈집) 수리비: 가구당 소요경비의 70%를 지원하되 최대 500만 원 한도 ·교육훈련비: 선도농가실습지원 가구당 300만 원(50만 원/6개월) 한도 귀농학교수강료지원 가구당 30만 원 한도
	익산 ·사업지원: 가구당 3천만 원 한도 보조/총사업비의 50% 미만에서 지원 ·주택(빈집) 수리비: 가구당 500만 원 한도 ·농기계임대지원: 가구당 연간 100만 원 한도(3년간 한정 300만 원 이내) ·교육훈련비: 선도농가실습지원 가구당 300만 원(50만 원/6개월) 한도
	장수 ·주택(빈집) 수리비: 가구당 500만 원 한도 ·교육훈련비: 교육수강료지원 가구당 30만 원 한도

지자체	지원내용
전북	<p>부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지임차비지원: 0.1ha~1ha 이내 농지 2년 이상 임차 후 실거래 임차료의 50% 범위 내에서 산지가격으로 산정 지원</li> <li>·농지구입비지원: 0.1ha~0.5ha 이내 3년 이상 자경목적으로 농지취득 총구입비의 10% 이내에서 250만 원 한도까지 지원</li> <li>·주택(빈집) 수리비: 가구당 소요경비의 80%를 지원하되 최대 1천만 원 한도</li> <li>·교육훈련비: 선도농가실습지원 가구당 360만 원(60만 원/6개월) 한도</li> <li>·귀농학교수강료지원 가구당 100만 원 한도</li> </ul>
	<p>완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착지원: 가구당 400만 원(농업시설 설치비, 농기계 구입비 등)</li> <li>·이사비지원: 가구당 50만 원</li> <li>·주택(빈집) 수리비: 가구당 소요경비의 50%를 지원하되 최대 500만 원 한도</li> <li>·출산장려금: 둘째부터 1인당 120만 원(첫월 40만 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씩)</li> <li>·교육훈련비: 교육비지원 가구당 30만 원 한도(1일 1만 원)</li> <li>·자동차번호판 무상제작지원: 신규 또는 교체비용 전액</li> <li>·쓰레기종량제 비닐봉투지원: 가구당 월 5매(100리터/매) 해당액 1년간 지원</li> </ul>
	<p>임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지원: 영농소득사업 또는 생산기반사업비 신청금액의 50% 한도 보조</li> <li>·주택(빈집) 수리비: 가구당 소요경비의 70%를 지원하되 최대 500만 원 한도</li> <li>·교육훈련비: 선도농가실습지원 가구당 300만 원(50만 원/6개월) 한도</li> </ul>
전남	<p>강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지원: 가구당 3천만 원 한도 보조(생산소득/생산기반사업) 초과시 자부담</li> <li>·주택(빈집) 수리비: 가구당 1천만 원 한도</li> <li>·교육훈련비: 선도농가실습지원 가구당 240만 원(30만 원/8개월) 한도</li> <li>·귀농학교수강료지원 가구당 30만 원 한도</li> </ul>
	<p>나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지원: 가구당 3천만 원 한도 보조(생산소득/생산기반사업) 자부담 50%</li> <li>·주택(빈집) 수리비: 가구당 500만 원 한도</li> <li>·교육훈련비: 선도농가실습지원 가구당 240만 원(30만 원/8개월) 한도</li> <li>·귀농학교수강료지원 가구당 30만 원 한도</li> </ul>
	<p>장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업농업인육성지원: 1인당 2천만 원~1억 2천만 원(35세 이하 70%, 36세~45세 이하 30% 차등 선발 지원)</li> </ul>
	<p>해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착지원: 가구당 50만 원</li> <li>·주택(빈집) 수리비: 600만 원(도 50%, 군 50%)</li> <li>·주택자금: 가구당 4천만 원 용자 지원</li> <li>·농어촌진흥기금: 가구당 1억 원 이내 용자(연리 2%)</li> </ul>
	<p>영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착지원: 전 가족이 농업에 종사할 경우 월 40만 원(연간 480만 원) 세대의 일부만 농업에 종사할 경우 월 20만 원(연간 240만 원)</li> <li>·주택(빈집) 수리비: 가구당 300만 원 한도</li> <li>·교육훈련비: 선도농가실습지원 가구당 240만 원(30만 원/8개월) 한도</li> <li>·귀농학교수강료지원 가구당 30만 원 한도</li> </ul>
	<p>무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어촌진흥기금: 개별농업인 2억 원(연리 2%), 단체 5억 원(연리 1%) 이내 용자</li> </ul>

지자체	지원내용
경북	<p>김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지원: 가구당 1천만 원 한도 보조(생산소득/생산기반사업) 초과시 자부담</li> <li>·주택(빈집) 수리비: 가구당 500만 원 한도</li> <li>·교육훈련비: 선도농가실습지원 가구당 576만 원(96만 원/6개월) 한도</li> <li>·귀농학교수강료지원 가구당 30만 원 한도</li> </ul>
	<p>청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착지원: 가구당 400만 원</li> <li>·농지구입세제지원: 가구당 200만 원(취득세, 등록세, 농특/교육세 포함)</li> <li>·농지구입 용자금 이차지원: 가구당 연간 150만 원 한도(3년간 지원)</li> <li>·주택(빈집) 수리비: 가구당 300만 원 한도</li> <li>·교육훈련비: 귀농학교수강료지원 가구당 30만 원 한도</li> </ul>
	<p>군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촌소득증대사업지원: 가구당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시설자금 3천만 원 또는 운전자금 2천만 원 이내 용자(연리 3%)</li> </ul>
	<p>영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지원: 가구당 500만 원 한도 보조(생산소득/생산기반사업) 초과시 자부담</li> <li>·주택(빈집) 수리비: 가구당 300만 원 한도</li> <li>·농지구입지원: 가구당 3천만 원 한도 용자</li> <li>·교육훈련비: 선도농가실습지원 가구당 240만 원(30만 원/8개월) 한도</li> <li>·귀농학교수강료지원 가구당 30만 원 한도</li> </ul>
	<p>영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지원: 가구당 500만 원 한도 보조(생산소득/생산기반사업)</li> <li>·주택(빈집) 수리비: 가구당 300만 원 한도</li> <li>·교육훈련비: 선도농가실습지원 가구당 240만 원(30만 원/8개월) 한도</li> <li>·귀농학교수강료지원 가구당 30만 원 한도</li> </ul>
	<p>문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지원: 가구당 2천만 원~2억 원 한도 용자</li> <li>·주택(빈집) 수리비: 가구당 500만 원 한도</li> <li>·주택구입자금: 가구당 2천만 원 용자(연리 3%)</li> <li>·농업경영컨설팅지원: 개별농가 800만 원, 법인/업체 1천만 원 한도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li> <li>·농업인턴제도지원: 선도농가가 채용시 인건비 보조 1인당 120만 원 (6개월) 한도</li> <li>·귀농컨설팅지원: 1인당 150만 원(보조 80%, 자부담 20%)</li> </ul>
	<p>예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착지원: 가구당 500만 원 한도</li> <li>·주택(빈집) 수리비: 300만 원 한도</li> <li>·주택구입자금: 가구당 4천만 원 용자</li> <li>·농어촌진흥기금: 개별농업인 2억 원, 단체 5억 원 이내 용자, 자부담 30% 이상 시설개선자금(연리 1.5%), 운영자금(연리 2%)</li> <li>·창업농업인육성지원: 1인당 20만 원~5천만 원까지 차등 용자(연리 3%)</li> <li>·농가도우미지원: 출산 전후 180일 기간 중 30일간 최대 72만 원 지원</li> <li>·출산육아지원: 둘째 이후 자녀 1인당 120만 원(월 10만 원/1년)</li> <li>·자녀양육비지원: 만 5세 이하 3만 9천 원~26만 원 지원</li> <li>·쓰레기종량제 비닐봉투지원: 가구당 200리터(20리터/10매) 지원</li> </ul>

지자체		지원내용
경북	상주	·사업지원: 가구당 500만 원 (도 30%, 시군 50% 차부담 20%) ·창업농업인육성지원: 1인당 20만 원~1억 2천만 원까지 차등 융자(연리 3%)
	봉화	·사업지원: 가구당 400만 원(농업시설 설치비, 농기계 구입비 등) ·이사비지원: 가구당 100만 원 ·주택(빈집) 수리비: 가구당 300만 원 한도 ·출산육아지원: 첫째 420만 원(월 7만 원/5년), 둘째 600만 원(월 10만 원/5년), 셋째 1,200만 원(월 20만 원/5년) ·출산장려금: 출생육아 1인당 1회 50만 원 ·정착장려금: 480만 원 ·교육훈련비: 가구당 50만 원 한도
제주	서귀포	·정착지원: 가구당 300만 원 한도 차등 지원/4인가족 300만 원 3인 이하 200만 원

### 동향 100607-02

### 우리나라 쇠고기 MPS 산출방법 개선

※ 지난 5월 17일~2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51차 OECD 농정·시장 작업반 회의에서는 우리나라의 쇠고기 MPS(시장가격지지) 산출방법을 개선하기로 결정함.

#### □ 개선내용

○ 우리나라 쇠고기의 MPS 산출방법상 '참조가격'을 「평균수입단가」에서 「생산비 - 관세액」으로 변경됨.

- MPS(Market Price Support) = (생산자가격 - 참조가격) × 생산량
- 생산자가격 : 도매시장가격(주로 냉장육) - 운송비 및 도축비
- 참조가격 : 수입 쇠고기(주로 냉동육) 평균 수입단가

○ OECD의 우리나라 쇠고기 MPS 산출방법 변경으로 우리나라 **농축산물 전체 %PSE(생산자지지추정치)**는 '08기준 방법변경 전 52%에서 46%로 낮아지게 됨.

- %PSE는 총농가수취액(농업생산액+정부재정지출)에 대한 PSE비율로 OECD에서 각국의 농업지지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사용하는 평가지표
- %PSE가 46%란 것은 농가수취액을 100으로 하였을 때 그 중 46%가 정부의 유·무형 보호 또는 지원(정부의 재정보조와 관세, 검역 등 비관세)에 의해 조성되었다는 것을 의미

#### □ 의의

○ 지금까지 우리나라 PSE는 국내외 가격차가 MPS값에 그대로 반영되었으나, 금번 개선조치로 품질격차 및 제도적 특성이 적절히 반영되어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졌다는데 의의가 있음.

○ 금번 OECD가 우리나라의 쇠고기 MPS 산출방법을 변경키로 한 것은 쇠고기 시장에 대해 우리정부가 관세 외에는 여타 시장개입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서, OECD가 우리의 무역정책을 그만큼 공정하다고 긍정 평가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